집회·시위 자문위원회 회의록

회의명	'25년 상반기 경찰청 집회·시위 자문위원회 정기회의	
개최 일시	2025. 7. 10.(木) 11:00 ~ 11:50	
개최 장소	경찰청 제2회의실	
참 석 자 (10명)	경찰	치안정보국장, 치안정보심의관, 치안정보상황과장, 치안정보분석과장, 치안정보협력과장
	위원	곽○○, 홍○○, 정○○, 이○○, 김○○(前 위원장)
회의내용	□ **집회·시위 자문위원회 운영 근거 및 활동사항 소개** ○ 집시법 제21조에 근거, 각급 경찰관서에 변호사·교수·시민단체 추천자·주민대표 등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'법정 위원회'를 운영 中 - 반기별 정기회의 등을 통해, 집회·시위 관련 ▵금지·제한통고 ▵이의신청 재결 ▵사례 검토 ▵기타 사항에 대한 자문 제공 □ **국회 집시법 개정안 현황 안내** ○ 집시법 개정안은 총 18건으로 행안위에 회부 되어 논의 中 ※ 주요 내용: ▵금지시간 5 ▵금지장소 8 ▵소음 4 등 □ **대화경찰제도 설명** ○ 집회·시위 개최 시 대화와 협의, 인권 보호, 안전 확보, 공공질서 유지 등 중심으로 업무수행,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기여 □ **위원들 주요 의견** ○ 집회·시위 문화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주체자 및 참가자, 경찰 모두의 자세 변화가 필요, 지금은 상당히 발전된 모습이나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논의를 함께해야 함(김00) ○ 집회·시위가 얼마나 평화롭게 진행되는가는 그 사회의 성숙도 내지 민주성을 확인할 척도, 굉장히 폭력적이고 전투적이던 예전 집회·시위가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 하더라도, 아직도 개선될 가능성이 존재(곽00) ○ 금지시간 조항이 반드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는 인권침해 문제와 법률적 문제 사이에서 논의가 필요(홍00)	